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활용방안

홍 종 민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문위원

1. 서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제정의 입법목적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15일자 고시 제88-13호로 제정 적용하여 왔으나 1989년도에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정부 발주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 주로 관급공사에만 행정지도로 실시되었고 민간발주공사는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199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근거와 법적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1991년 9월 27일 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하여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재해는 오히려 '9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에 8.5%

증가하였고 '91년에는 4.6%나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물량의 증가에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법적 강제조항을 신설한 년도부터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문은 이웃 일본의 경우 1981년도부터 건설업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 이후 건설업의 재해는 강도율 및 도수율이 안전관리비계상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표 1-1 참조)

이는 표준 안전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함으로써 표준안전관리비가 건설재해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한다.

2.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관련법 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

<표 1-1>

구 분	'78	'79	'80	'81	'82	'83	'84	'85	'86
강도율	8.43	6.92	6.67	4.55	2.71	2.28	2.20	2.09	2.89
도수율	1.28	1.47	1.47	0.96	0.55	0.88	0.39	0.22	0.37

관리비의 사용)

- ① 도급인인 사업주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기본비용 계상기준표

공사분류	대상액	5억원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미만	비율(X)	기초액(C)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일반건설공사	2.48(%)	1.81(%)	3,294천원	1.88(%)	

주 : 1. 대상액=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당해 비용 포함)+직접노무비

2. 대상액이 50억원인 중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113백만원이며, 낙찰률이 90%인 경우 수급인은 113백만원의 90%인 101.7백만원 이상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함.
3. 대상액이 10억원이 중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26,648천원이며, 낙찰률이 90%인 경우 수급인은 26,648천원의 90%인 23,983.2천원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함.

※ 공사분류

1. 중건설공사 : 냅, 수력발전시설, 터널
2. 철도 궤도신설공사 : 철도 및 궤도, 고사 및 지하철도
3. 일반건설공사 : 건축, 도로, 기계장치, 기타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

1. 기본비용(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 용 기 준
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	<input type="radio"/>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또는 업무 수당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기본비용의 40% 미만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 용 기 준
건비 및 각종수당, 안전보건을 위한 정리정돈에 소요되 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의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또는 업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 ○ 안전보건업무 수당 또는 촉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담당자 - 산업보건의 - 터널내부에서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의 방화담당자 ○ 근로자의 안전보건학보를 위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 관리, 현장정리정돈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각종 수당 ○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위하여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소요되는 제반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 보 호구 등 안전 장구 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 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태리 등의 권리방지장치 - 승강기, 호이스트,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 -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등의 역화 방지 장치 - 교류아아크용접기 등의 전격방지기 - 크레인 등의 해지장치 - 목재가공기계 등의 반발예상장치 - 용접기 등의 누전차단기 - 기타의 안전장치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기본 비용 30 % 미만(나항 및 다향을 합 한 금액)
다. 사업장의 안전 보 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등 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자체안전보건점검 및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등 유해작업장 계측설비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소요되는 제비용 	
라. 법령에 의거 실시되 는 각종 안전보건직 무교육, 사내안전보 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교육 등에 소요 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교육 ○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교육 ○ 사내자체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기본비용의 30 % 미만(라항, 마항 및 바항 을 합한 금액)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 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치료용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등 ○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해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행사비, 포상비, 각종 서식비 등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 심사 및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2. 별도계상비용(각 공사 현장 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적산하는 안전관리비)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 용 기준
가.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추락위험장소 접근금지대책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용 설비 또는 시설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또는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장구 및 안전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등 안전표시 및 경고설비 - 신호수용반사조끼, 용접용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안전발판 등 안전기별, 신호용랜턴(신호등), 차량유도등, 위험경보기 등의 안전장구 및 용품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설비 - 터널, 개내 등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시설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시설의 제작 및 관리에 사용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총 기본비용의 30% 미만

라.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산안법 동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

① 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3. 소규모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상 문제점 및 대책

가. 적용상의 문제점(법적 문제)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는 고시 제3조에 규정하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제12조 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1. 기타 광업종 토사석 채취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4	별표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	
3. 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2	별표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5. 제1차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별표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	
8. 건설업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 (공사금액이 5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추가될 때마다 1인씩 추가)	별표 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3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300인 미만	1	별표 4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150인 미만	1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